

2020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스마트혼합훈련 추가심사 계획 공고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7조의2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4조 및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추가 선정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3일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



I. 사업 목적

-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실업자·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하되,
 - ‘코로나19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집체훈련의 운영 중단에 대응하고자 스마트혼합훈련 과정* 추가 선정
- * 기존에 집체훈련으로 인정받았으나, 코로나19로 인해 승인받은 대로 운영이 불가능하여, 집체+원격 혼합과정으로 교과목·시수 등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과정

<스마트혼합훈련 활성화 방안 요약>

◇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훈련중단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훈련 개설·촉진방안은 다음과 같음

대상	추진방안	조치사항
실시 중인 집체훈련	- 원격훈련(최대 50%까지)으로 전환 지원	· 원격훈련 대체지침 既 시달(8.25.)
미개설된 집체훈련	- 스마트혼합훈련 추가 모집	· 9월~11월까지 매달 모집 심사

- 스마트혼합훈련: 집체훈련과 비대면(Untact) 원격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
 - 원격보조훈련: 자체조달콘텐츠(자체제작, 시중조달) 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공공콘텐츠(STEP)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
 - 쌍방향훈련: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(Zoom, Skype 등)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

□ 스마트혼합훈련 추가신청 개요

- **(요건)**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이 신청 대상이며,
 - 전체 훈련시간의 10%이상 ~ 50% 미만(최소 20시간)*을 원격보조훈련과 쌍방향훈련으로 편성한 훈련과정
 - * 쌍방향훈련 단독 편성은 불가하며, 반드시 원격보조훈련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10% 이상(최소 20시간)이어야 함
 - 원격보조훈련은 반드시 전공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야 하며, NCS 소양교과인 직업기초능력만 편성할 경우 '미흡' 판정
 - * 민간 LMS 활용 과정은 자체조달콘텐츠만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함(민간 LMS 내 공공콘텐츠는 '21년부터 활용 가능)
- **(훈련비)** 원격보조훈련 중 자체조달콘텐츠 활용시 'NCS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'로 지급하고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공공콘텐츠 활용시 직종 구분없이 시간당 4,600원 지원
- **(신청방법)** 원격보조훈련은 과정신청 시 '원격보조훈련' 선택하고, 쌍방향훈련 시간은 집체훈련 교과에 작성
- **(의무사항)** ①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을 추가 승인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인받은 과정 중 1개 과정 이상을 개설(실시)해야 함
 - ②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은 반드시 훈련이수자평가를 신청해야 함
 - ③스마트혼합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교·강사 중 최소 한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'혼합훈련 설계와 운영'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(미 참여시 과정 개시 불가하므로, 각 월별 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교육 이수 요망)
 - * 자세한 내용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(hrdi.koreatech.ac.kr) 공지사항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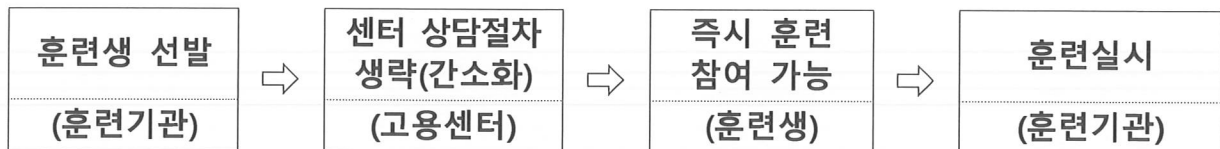
□ 스마트혼합훈련 우대사항

- **(추가 훈련과정 부여)** 기존 집체로 인정받았으나, 개설하지 아니한 실업자 국기 및 계좌제훈련을 반납할 경우 반납 과정에 1개 과정을 추가로 신청 가능(1개 과정 반납 시 2개 과정 신청 가능)

* 2개 과정 모두 스마트혼합훈련 과정으로 신청해야 함

- **(상담 생략)** 스마트혼합훈련을 승인받고 1개월 이내에 개설할 시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고용센터 상담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훈련 참여 가능

< 스마트혼합훈련 훈련생 등록절차 >



- **(개설실적 미반영)** 승인받은 스마트혼합훈련을 먼저 개설하는 경우 기존 집체훈련을 미개설하여도 '21년 심사평가 불이익을 면제*

* 개설된 스마트혼합훈련이 포함된 직종에 한해 집체과정 미개설에 따른 신청한도 미차감

- **(이수자평가 점수구분)** 훈련기관인증평가에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의 훈련 이수자 평가 등급 점수 별도 적용('21년도 훈련기관인증평가 계획공고에 별도 안내 예정)

- **(관련 컨설팅 제공)**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현장컨설팅 등의 지원사항은 중단없이 지속

* 스마트혼합훈련 훈련생 상담 및 오리엔테이션 샘플 자료는 www.ksqa.or.kr>소통마당>공지사항>집체(통합)훈련심사>2020년 하반기 스마트 혼합훈련 개설 안내 참조

□ 기타

- **(유의사항)** 스마트혼합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원격학습 지원시스템(LMS)를 확보하지 못하거나, 스마트혼합훈련 요건(훈련시간 비중 등)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* STEP 온라인강의실 지원 문의는 온라인평생교육원 홈페이지(e-koreatech.step.or.kr/step) 참고

- **(기타)** 스마트혼합훈련으로 인정받은 내용은 다시 집체훈련으로 변경할 수 없음(단, 집체인정 교과에 대해서는 원격 대체지침에 의해 변경 실시)

II. 세부내용

1

신청자격: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훈련기관

1. 법 시행령 제12조,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

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

-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-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
2. 훈련기관 인증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

☐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거쳐 인증 등급(1년 이상)을 보유한 훈련기관

* 심사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인증유예된 경우 과정선정에서 제외

3. 실시가능직종 및 NCS확인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

☐ '실시가능직종(HRD-Net<심사평가시스템>)' 및 'NCS 확인강사(HRD-Net)'를 승인받은 훈련기관

- 다만,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 운영이 제한*되거나, 관련 법령에 의해 집체훈련이 원칙인 훈련과정은 경우 선정제외 또는 인정 취소 할 수 있음

* (예시)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만 훈련과정 운영 가능

2

신청 대상

- ① 2020년 상반기 운영 통합심사에 선정*되었으나 미개설된 과정 중 향후 운영 계획이 없는 훈련과정(실업자 국가·계좌제)으로,
- 해당과정을 반납*하고, 동일직종(국기직종, NCS 세분류)의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을 희망하는 140시간 이상 과정
- * 2019년도 9회차에서 신규로 신청한 과정만 해당하며, 유효기간 연장과정은 미해당
- 단, 추가 신청과정의 정원이 반납과정의 정원보다 많거나, 훈련 기관의 실업자 국가 직종별 잔여 정원보다 많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



유의사항 예

【훈련과정 신청시 유의사항 예】

- "스마트 콘텐츠 실무과정"에 대해 반납하였으나, 해당 과정 국기직종의 승인받은 총 인원인 80명 중 70명은 훈련을 실시하였거나, 실시중(중도탈락 포함)이어서 잔여인원이 10명 밖에 되지 않아 반납 과정의 정원과 상이하므로 신청 불가함

* 반납 과정 정원보다 기 배정된 총 인원의 잔여인원이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, 반납된 훈련과정의 정원에 해당하는 1개 훈련과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

반납 훈련과정		통합심사 승인 사항		훈련 실시 인원	잔여 인원	비고
훈련과정명	정원	국기 직종명	국기직종 총 인원			
스마트 콘텐츠 실무과정	20	스마트웹&콘텐츠개발	80명	70명	10명	신청 불가
그린리모델링 적용과정	15	친환경건축시공	40명	15명	25명	15명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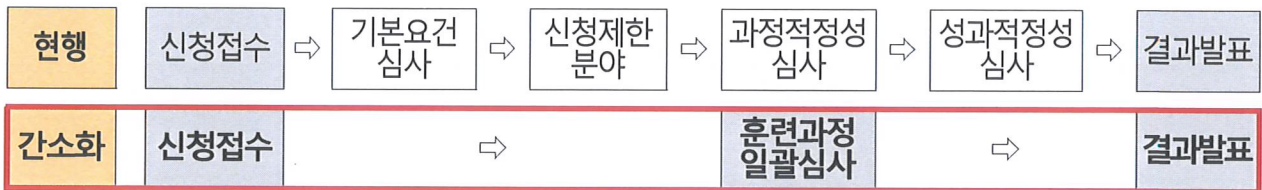
- ② '20년 민간 LMS 지원 사업을 통해 LMS를 분양받은 기관
- 기 승인받은 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이 없거나, 기 승인된 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을 월별 추가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모두 개설한 기관(과정반납 불필요)

3

신청가능 훈련과정 수

- 1개 과정 반납 시 반납 과정과 동일직종(국기직종, NCS세분류)인 스마트혼합훈련으로 2개 과정 신청 가능
- * (예시) 자동차정비과정(20명) 반납 후 스마트자동차정비과정Ⅰ(20명) + 스마트자동차정비과정Ⅱ(20명) 신청
- ※ 과정 반납 후 스마트혼합훈련으로 추가 승인 받은 경우에는 반납 과정의 미개설 실적이 2021년 통합심사의 해당 직종 신청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- LMS 지원 사업을 통해 LMS를 분양받은 경우 과정 반납 없이 기관당 2개 과정 신청 가능

< 통합심사/추가선정심사 절차 비교 >



1. 기본요건 심사, 신청제한분야

- 기 선정한 과정의 기본요건심사, 신청제한 분야 심사 인정
→ 반납된 과정의 심사 이력을 준용하여, 스마트혼합훈련 요건 충족여부만 심사

2. 성과적정성 심사

- 기 선정한 과정의 성과적정성심사(실업자 계좌제), 산업지역인력 수요심사(실업자 국기)를 인정
→ 반납된 과정의 심사 이력을 준용하여 심사 미 실시

3.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(훈련과정 일괄심사)

- 기존 훈련과정은 이미 훈련과정으로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신규 편성한 원격콘텐츠의 적정성과 연계성 위주로 심사하되,
 - 훈련내용·방법, 교·강사, 시설, 장비의 변경여부가 있을 경우 훈련 목표를 적절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만 심사

* 훈련시설, 장비, 교재가 미흡할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 후 훈련기관이 수정보완

** 원격보조훈련은 완성된 콘텐츠(자체조달콘텐츠, 공공콘텐츠)를 제출해야 하며, 콘텐츠 품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승인하여 수정·보완 기회 제공

□ 훈련직종

- 훈련직종은 반드시 반납한 훈련과정이 속하는 직종(국기직종, NCS세분류) 선택

* 반납한 과정과 상이한 직종을 신청할 경우 선정하지 않음

□ 과정 신청방법

-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
-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→ 통합심사 → 심사신청 → 심사공모
조회 → 통합심사(2020년도 9회차*) 선택

* 10월 추가심사는 2020년도 9회차로 선택하며, 11월 추가심사 회차는 추후 안내

- 훈련과정 신청시 훈련과정명 앞에 [스마트혼합훈련]임을 명기

* 예시: ① **스마트혼합훈련+국기훈련** ⇒ “[스마트혼합훈련][디지털컨버전스] 스마트 콘텐츠와 웹 융합 응용SW개발자 양성”

② **스마트혼합훈련+기타훈련** ⇒ “[스마트혼합훈련] 디지털콘텐츠제작 & 유튜브 동영상 제작실무”, “[스마트혼합훈련]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취득과정”

□ 반납 신청방법

-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→ 통합심사 → 훈련과정 반납 → 반납
신청목록 → 2019년도/9회차 선택 후 검색 → ‘반납신청’

연번	년도	회차	훈련과정명	적합훈련대상	NCS [코드]	NCS 적용여부	심사결과	반납신청상태	반납신청일자	반납
26	2019	9	계산제안활동 ABC (ANS2019)	사업주위탁	QM/QC관리 [02040201]	적용	적합	신청	2019-02-12	반납완료
25	2019	9	사례로 배우는 현장혁신 노하우 (ANS2019)	사업주위탁	품질관리 [02040103]	적용	적합			반납신청

- 선정된 과정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,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유효한 인증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, 인증등급이 취소된 경우*

* '유효인증 등급', '인증등급 취소' 산정 기준일은 추가심사 결과 공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함

-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- 위촉계약을 하지 않은 교·강사의 개인정보(HRD-Net 아이디 및 비밀번호)가 무단 활용*되거나,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선정제외 또는 인정 취소할 수 있음

*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
-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과정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
- 코로나 19 방역조치 미흡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-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, 방역, 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

- 반납과정 수보다 신청가능 훈련과정 수*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
- 신청 순서에 따라 후순위에 신청한 과정은 '부적합' 판정

* 2019년도 9회차 통합심사(20년도 상반기 운영)에서 적합받은 과정 중 반납을 신청한 과정의 2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반납 과정이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에는 '부적합' 판정

III. 유의사항

1

반납 및 신청 유의사항

- 과정 반납 후 스마트혼합훈련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반납한 과정과 동일한 훈련내용으로 최대한 편성
- 반납한 과정은 훈련개시 가능기간(유효기간) 종료일을 월별 추가 심사 신청 마감일*로 일괄 조정
 - 기 선정된 과정을 반납하지 않은 과정은 추가선정 하지 않음
- * 10월 추가심사: 2020. 10. 20.(화) / 11월 추가심사: 2020. 11. 5.(목)
 - 예: 훈련개시가능기간 2020. 1. 1.~2020. 12. 31. → 2020. 1. 1.~2020. 10. 20.로 조정
- 실업자 국기 반납 후 추가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납 신청을 반려하고, '21년 과정심사 시 신청한도 수를 차감함
 - 직종별 정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관의 훈련운영계획을 고려하여,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·접수해야함
- 소재한 지역 및 직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과정 신청*
 - * 동일·유사과정 및 훈련수요를 초과하여 과정을 신청할 경우 추후 적합률·모집률·개설률 등에 관한 심사지표 도입·변경 시 실적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의 최초 훈련개시 가능기간(유효기간)은 과정 승인일~'20.12.31.까지 부여되며, 추가 심사에서 승인받은 과정 중 1개 이상을 1개월 이내 개설한 경우 유효기간을 '21.7.15.로 연장함
 - 선정 이후 훈련개시 가능기간(유효기간)까지의 일정이 촉박하여 훈련 과정 개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청 필요
- 신청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한 훈련기관에게 있으므로, 입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
 - 수정·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, 마감일 1일 전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'신청완료'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신청 바람

2

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활용

- 신청기간 내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에서 '신청완료'를 누르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신청완료를 누른 후 신청 여부 확인
- 심사 관련 안내는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 → 공지사항 → 유관기관 공지사항)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(www.ksqa.or.kr)(집체훈련심사센터 → 공지사항)에 공지되므로 수시 확인
- 심사 신청 공지 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가급적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

3

훈련교·강사

훈련교·강사 신청

훈련과정 심사 단계

- 훈련과정 교과목별 최대 3명까지 'NCS확인강사'*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
- * 훈련교·강사는 자격, 경력 등을 HRD-Net(hrd.go.kr)에 등록 →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승인(40점 이상) 및 NCS 확인강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
- ** 강사 신청관련 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ksqa.or.kr) > 소통마당> 집체(통합) 훈련심사> 공지사항> "[공지] 훈련 교강사(NCS확인강사) 신청 매뉴얼 안내(2020.3.3.) 참고
- 과정심사 시 교과목별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여부를 심사

훈련교·강사 변경

훈련과정 운영 단계

- 통합심사의 과정적정성 심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교·강사(교과목별 최대 3명) 내에서만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
- 통합심사의 과정적정성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된 훈련교·강사(교과목별 최대 3명)를 다른 훈련교·강사로 변경하려는 경우
- 유사한 수준*의 훈련교·강사로 변경신청하고,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의 변경인정을 받아야 함
- * 원칙적으로 "NCS확인강사 배점기준"에 따른 훈련교·강사 간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내(미만)인 경우를 의미

- 단, 아래의 경우 변경신청 및 변경인정 절차를 거치되,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추가 심사* 실시(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31조 참조)

* 추가심사 절차: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.지사 → 직업능력심사평가원 →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.지사

- ① 실업자국기훈련과정을 최초로 운영(HRD-Net 실시신고)하기 전에 훈련교·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
- ② 실업자국기 훈련과정의 훈련교·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

○ 예비군 훈련, 본인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*

- 변경신고함으로써 NCS확인강사가 아닌 자도 임시(월력상 15일 이내) 훈련 교·강사로 활용 가능

○ 훈련교·강사 변경이 빈번한 기관은 차기 훈련과정 통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 자세한 훈련과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

참고2

훈련교·강사 제도 개편 사항

○ **(보수교육)**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훈련교·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(법 제37조 개정)

- 2021년 하반기 운영 통합심사부터 보수교육 이수 여부 반영 예정

* 교육이수 시간,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(hrdi.koreatech.ac.kr) 공지사항 참고

○ **(NCS 소양교과)** 훈련교·강사(NCS확인강사) 배점 세부기준 변경(2020.2.27.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고문 제2020-12호)에 따라, 훈련교·강사(NCS확인강사)의 NCS 소양교과(직업기초능력) 이수 의무화

- 2021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부터 과정별로 등록된 훈련교·강사의 NCS 소양교과 이수 여부 반영 예정

* 2020년 10월~12월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개설되는 'NCS 소양교과(직업기초능력)'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IV. 추가심사 일정

단계	10월 추가심사	11월 추가심사
과정반납 및 심사신청*	2020. 10. 14.(수) 10:00 ~ 2020. 10. 20.(화) 18:00	2020. 10. 30.(금) 10:00 ~ 2020. 11. 5.(목) 18:00
심사결과발표(예정)	2020. 11. 5.(목)	2020. 11. 27.(금)
조건부심사신청	2020. 11. 6.(금) ~ 2020. 11. 12.(목)	2020. 11. 30.(월) ~ 2020. 12. 4.(금)
의무개설기간**	2020. 11. 6.(금) ~ 2020. 12. 4.(금)	2020. 11. 30(월) ~ 2020. 12. 31.(목)

* 수정 · 보완기간은 별도 부여하지 않음

** 의무개설기간 내 조건부심사 신청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조건부적합 판정된 과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조건부적합 사유를 해소해야함

❖ 문의사항별 문의처 안내

문의사항	문의처
HRD-Net (심사평가시스템)관련 문의	한국고용정보원 (www.hrd.go.kr → 고객센터 → 질문과 답변)
통합심사 관련 문의	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Q&A (www.ksqa.or.kr → 소통마당 → 공지사항 → 집체(통합) 훈련심사 → Q&A)
NCS 확인강사	
스마트혼합훈련 추가심사 문의	
원격보조훈련 시중조달콘텐츠 관련 문의 (자체제작, 시중조달)	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Q&A (www.ksqa.or.kr → 소통마당 → 공지사항 → 원격훈련 심사 → Q&A)
민간LMS 관련 문의	
공공콘텐츠 및 STEP 이용문의	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(https://e-koreatech.step.or.kr/step → 고객센터 → 질의응답)

I. 스마트혼합훈련 개요

- **(정의)** 집체훈련과 비대면(Untact) 원격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
- **(요건)**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이 신청 대상이며,
 - 전체 훈련시간의 10%이상~50% 미만(최소 20시간)*을 원격보조훈련과 쌍방향훈련으로 편성한 훈련과정
 - * 쌍방향훈련 단독 편성은 불가하며, 반드시 원격보조훈련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10% 이상이어야 함
 - 원격보조훈련은 반드시 전공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야 하며, NCS 소양교과인 직업기초능력만 편성할 경우 '미흡' 판정
 - * 민간 LMS 활용 과정은 자체조달콘텐츠만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함(민간 LMS 내 공공콘텐츠는 '21년부터 활용 가능)

< 원격훈련 방법 >

구분	훈련 방식
원격보조훈련	■ 훈련콘텐츠와 콘텐츠 학습이 가능한 LMS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훈련 - 훈련콘텐츠는 차시당 최소 25분 이상이어야 하며, 단위 수업시간(50분)을 기준으로 시험, 과제 수행, 보충자료 학습 등 다양한 재량학습활동을 결합하여 운영 가능(<별첨1> 24쪽 참조)
쌍방향훈련	■ 참여자의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(Zoom, Skype 등)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- 단위 수업시간(50분)을 기준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과제 수행, 콘텐츠 학습, 보충자료 학습 등 다양한 재량학습활동을 결합하여 운영 가능(<별첨1> 44쪽 참조)

- **(수료기준)** 원격훈련(진도율 가중치 합 80% 이상)과 집체훈련(출석률 80% 이상)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**(장려금 지급)**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(훈련장려금의 지원) 및 제50조(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)에 따라 집체훈련 비용을 지급하고, 원격훈련은 진도율 가중치 합계*에 따라 지급(채용예정자 훈련에 한함)

* 비대면훈련 진도율 가중치 합계가 80% 이상 정액(116,000원) 지급, 80% 미만 미지급

- **(심사기준)** 원격보조훈련의 과정적정성은 콘텐츠심사*로 실시하며, 쌍방향훈련은 집체과정의 과정적정성 심사 기준 적용

* 콘텐츠의 내용 및 연계 적정성, 원격훈련 운영(분량, 재량학습 및 평가 활동) 적정성, 콘텐츠 품질(화질, 음질, 윤리성) 적정성 등

II. 원격훈련 방법

1. 원격보조훈련

□ 콘텐츠 조달 방법

- **(자체조달콘텐츠)** 훈련기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, 온라인평생교육원의 STEP 마켓 또는 민간LMS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매(NCS 직종별 지원단가 적용)

* 훈련과정 구성 방법은 <별첨1> 24쪽 참조

** STEP 마켓 활용 방법은 <별첨1> 72쪽 참조, 민간LMS 공급기관 제공 콘텐츠는 공급사 별도 문의

- **(공공콘텐츠)** 온라인평생교육원의 STEP 공공콘텐츠 활용(훈련단가 4,600원 적용)

* 훈련과정 구성 방법은 <별첨1> 39쪽, 공공콘텐츠 목록은 <별첨1> 97쪽 참조

□ 학습관리시스템(LMS) 확보 방법

< 학습관리시스템(LMS) 종류 >

구분		확보 방법
민간 LMS	임대 지원 사업	· 민간LMS 임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LMS를 공급 받는 방법
	자체LMS 구축	· 원격훈련 콘텐츠 탑재가 가능하도록 훈련기관에서 자체 구축하고,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을 받는 방법
STEP 온라인 강의실		·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의 STEP 온라인 강의실을 분양 받는 방법

- 자체LMS를 보유한 기관은 <별첨1> 16쪽을 참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로 LMS 인증 요청(既 인증기관 제외)
- 온라인평생교육원 STEP 온라인강의실 분양 희망기관은 <붙임3> 참고하여 온라인 강의실 신청(既 분양기관 제외)

2. 원격보조훈련 + 쌍방향훈련 혼합 <권장>

- 원격보조훈련과 쌍방향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훈련*(훈련방법별 지원단가 적용)

- 원격보조훈련과 쌍방향훈련의 과정 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* 쌍방향훈련 단독 편성은 불가하며, 반드시 원격보조훈련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10% 이상이어야 함

* 원격보조훈련의 훈련과정 구성 방법은 <별첨1> 24쪽, 쌍방향훈련은 44쪽 참조

III. 스마트혼합훈련 문의처

문의사항	문의처
스마트 혼합훈련 컨설팅 신청	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TEL. 02-6943-9950
	스마트 혼합훈련 컨설팅 신청 홈페이지 http://smart.e-koreatech.ac.kr/consulting
STEP 온라인강의실	온라인평생교육원 TEL. 041-580-4417, 4466

I. 심사 신청 방법

-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 -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→ 통합심사 → 심사신청 → 심사공모
조회 → 통합심사(2020년 9회차) 선택

II. 심사 신청서 작성

<1.원격보조훈련>

□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 심사 신청서

- ① 원격보조훈련 편성 여부: '예' 선택
- ② 원격 보조과정개요: '추가' 버튼 클릭

원격 보조과정개요						추가	삭제
번호	구분	교과명 (콘텐츠명)	세부내용	훈련시간	시간당 적용단가		
1	원격보조과정	원격보조과정개요	원격보조과정개요	1시간	100원		

- ③ 원격훈련 교과: 원격 보조과정개요의 추가 버튼 클릭 후, 사용할 공공 콘텐츠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원격훈련 교과 정보를 각각 입력
- ④ 교과목(콘텐츠명): 콘텐츠 유형에 따라 자체조달콘텐츠 또는 공공 콘텐츠의 콘텐츠명을 입력
 - **(민간LMS 및 자체LMS 활용 과정)** 활용할 자체조달 콘텐츠명을 입력하고, <별첨2>를 작성하여 각 월별 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이메일 (e-simsa@koreatech.ac.kr)로 제출
 - **(STEP 온라인 강의실 활용과정)** 활용할 자체조달 콘텐츠와 공공

콘텐츠명을 입력*하고, <별첨3>을 작성하여 각 월별 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이메일(e-simsa@koreatech.ac.kr)로 제출**

* 공공콘텐츠 활용 시 <별첨1> 97쪽~104쪽의 STEP 공공콘텐츠 목록 중 활용할 콘텐츠의 '콘텐츠명'을 검색하여 입력

** STEP 온라인 강의실이 없는 기관은 '<붙임3> STEP 온라인 강의개설 신청서'와 <별첨3> 양식 2개 제출 필요

⑤ 세부내용: 재량학습활동, 훈련생 평가, 차시 활용 정보 등 필수 입력

- **(재량학습활동)** 단위수업시간(50분) 기준 콘텐츠 학습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 대한 학습 활동을 작성

- **(훈련생 평가)** 콘텐츠를 활용하여 훈련한 내용에 대한 훈련생 평가 방법 및 시기(콘텐츠 내 평가를 포함하여 즉시 실시 또는 집체훈련 중 실시 등), 평가 기준(60점 미만 시 재평가 등) 등을 작성

- **(차시 활용 정보)** 공공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, 선택한 공공콘텐츠를 전부 활용할 경우 '전체 활용', 일부만 활용할 경우 활용하는 차시 번호만 입력

⑥ 훈련시간: ③에서 선택한 콘텐츠의 차시 수 입력(예: 7차시 = 7시간)

* 단, 자체조달콘텐츠는 재생시간이 25분 이상인 차시 수만 기재하여야(예: 총 30차시 과정 중 25분 이상인 차시가 28차시인 경우 = 28시간)

- HRD-Net 심사 신청서 상 콘텐츠 시간과 민간LMS 또는 STEP 온라인 강의실에 신청한 콘텐츠(공공 또는 자체조달콘텐츠) 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, 불일치로 스마트 혼합훈련 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* 콘텐츠를 활용하는 원격보조훈련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

<원격보조훈련 활용과정 HRD-Net 원격훈련 교과 작성 예시>

①구분	②교과목 (콘텐츠명)	③세부내용	④훈련시간
공공콘텐츠 ▼	기술능력	-재량학습활동: 기술선택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과제 수행 -훈련생 평가: 재량학습활동 중 실시한 과제를 평가를 실시하고, 학습 성과가 저조(예: 60점 미만 등)한 경우 과제 보완(재평가) 실시 -차시활용정보: 5,6,7차시	5
STEP 내 자체콘텐츠 활용 ▼	편집디자인 소프트웨어 활용	-재량학습활동: 편집디자인 S/W를 활용한 개별 과제 수행 -훈련생 평가: 재량학습활동으로 수행한 훈련생 과제물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, 학습 성과가 저조(예: 60점 미만 등)한 경우 과제 보완(재평가) 실시	30

<2.원격보조+쌍방향훈련>

※ 쌍방향훈련 단독 편성은 불가

- 쌍방향훈련과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보조훈련을 혼합하여 스마트 혼합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HRD-Net 심사 신청서의 ①원격 보조 과정 개요(공공 또는 자체조달콘텐츠 정보), ②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(쌍방향훈련 정보)을 모두 작성해야 함
 - 앞서 설명한 공공콘텐츠 또는 자체조달콘텐츠 활용 훈련 정보는 '원격 보조과정 개요'에 입력
- 쌍방향훈련을 편성하는 교과의 '교수학습방법'을 '쌍방향훈련'으로 선택 및 입력
 - 만약 2개 이상의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경우 '혼합형(쌍방향 포함)'을 선택 후 상세내용에 '쌍방향훈련'과 다른 교수학습방법을 작성
 - * 혼합형의 상세 교수학습방법 작성예시 : "쌍방향훈련+협동학습"
 - ** 교수학습방법에 쌍방향훈련이 포함된 교과는 해당 훈련시간이 모두 원격훈련 편성비율로 인정되므로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편성 비율 계산에 유의
- '평가방법'에 쌍방향훈련으로 실시한 내용을 평가할 방법을 선택
 - 쌍방향훈련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신청 시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